



# 중앙환경위, 사슴농가에 소음피해 인정

“공사소음 유발 시공업체, 농가에 1천4백만원 보상하라”

공사 시공사측의 소음 유발에 따른 피해에 대해 사슴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 본회에는 2001년도까지만 해도 한해 한두건에 그치던 소음으로 인한 농가 피해금액 산정의뢰가 급증했다. 피해 산정의뢰를 해오는 곳도 개별 사슴농가뿐 아니라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회사, 군부대, 법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는 예전까지만 해도 농가가 다소의 불이익을 보더라도 참고 견디거나 혹은 소음 유발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피해보상액에 '을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봐오던 농가들이 이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인의 권리를 뜯떳이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의 사례들로 봤을 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농가들이 최초에 시도하는 것은 공사 시공사측과의 합의. 공사 시공사측은 사슴농가의 규모와 소음정도 등을 본회에 알려주며 피해금액 산정을 의뢰하고 본회에서 산정한 금액을 보상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금액이 커질 경우 공사 시공사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농가가 가장 손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공사 등의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신청절차도 간소할뿐더러 비용도 저렴해 시공사측과의 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재판까지 가는 번거러운 과정에 앞서 이용해 볼만한 곳이다. 다만 환경분쟁조정위가 결정한 조정금액에 대해 농가나 시공사 중 어느 한쪽이 거부를 하면 강제 집행 권한은 없다. 그러나 최종 재판이라는 과정까지 가더라도 환경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조정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농수로 건설 소음으로 피해를 본 사슴농가에 대해 총 1천4백여만원의 금액을 농가에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될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사슴농가 배상 결정 내용

### 이 유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시행하는 부안지구 농촌용수로 공사장에서 2002. 8월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가축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입은 가축 피해액 80,888,82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피해에 대하여 해당 공사 시행시 소음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한 바 기준이하로 나타났으며, 신청인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로서, 스트레스성 질병에 관한 진단서 및 신청인의 요구는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조사, 관련 문헌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 사실조사 결과

####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일대 용수로사업 지역으로서 공사장에서 서쪽으로 부안-변산간 30번 국도가 지나고 있으며, 부안으로부터 약 13km 정도 이격되어 있다. 공사장의 북쪽에는 금광저수지가 있고, 공사장은 야산에 중간지점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터널지역 공사장의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자락의 끝으로부터 북서쪽 방향으로는 논과 밭 등의 평야가 있다. 그리고 공사장과 80~200m 이격하여 2동의 반개방형 폐쇄식 피해 축사가 위치해 있다.

### 나. 신청인 양축 현황

(단위 : 두, ( )은 암컷)

연 월	전체 사육두수		한 우			사 습		
	한우	사습	자우	육성우	성우	자록	육성록	성록
2001.12	21	36	2	5	14 (14)	-	10	26 (21)
2002.12	13	35	-	3	10	-	10 (4)	25 (21)
2003. 5	14	37	-	3 (2)	11 (2)	-	10 (4)	27 (21)
계	48	108	2	11	35	0	30	78

## 다. 피신청인 공사 현황

### (1) 공사개요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고 (유)발해, 삼풍건설(주), (주)일등건설 등이 부분별로 시공하고 있는 공사로서 총공사기간 2000.10.11 ~ 2004.12.31(관련공사 : '02.8.10 ~ '03.5.22 현재, 발파공사 : '02.08.27 ~ '02.10.25), 총사업비 248억 5,300만원의 용수로공사 중 분쟁지역 공사는 (유)발해가 시공하고 있는 터널공사장과 공사장 진입로 공사 등이다.

### (2) 사용장비 등

공사기간 중 투입된 주요 장비는 브레이커, 덤프트럭, 굴삭기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발파지역과는 약200m, 굴삭 및 암파쇄지역과는 약 100m, 복토공사지역과는 약80m 떨어져 있다.

## 라. 소음 발생량 평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및 작업일지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공사기간 동안 평가 소음도가 78dB(A)로 나타났다.

## 마. 진동 발생량 평가

### (1)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결과 토공 및 파일항타 공사 등 기초 공사기간 동안 평가진동도가 33dB(V)로 나타났다.

### (2) 발파

시공회사에서 제출한 발파작업일지와 시험발파보고서를 토대로 진동속도를 추정하였다. 지발당 장약량은 신청인들과 가장 가까운 발파지점에서 사용한 양중 가장 많은 양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최대 진동속도는 0.062 cm/sec로 나타났다.

## 2. 인과관계 검토

신청인의 목장은 공사 이전에는 한적한 곳에 소재하여 사육한우와 사슴이 외부의 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용수로공사가 시작된 후 공사 장비인 브레이커,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의 각종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가축들이 매우 쉽게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용수로 공사시 사용장비를 토대로 추정한 평가소음도 78dB(A)은 관련문헌(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1)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소음 수준에서는 한우의 경우 유·사산, 번식효율저하, 성장지연, 폐사 등의 피해가 5~20%의 발생확률이 있고, 사슴의 경우 또한 유·사산, 수태율저하, 성장지연, 폐사 등의 피해가 5~ 20%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지조사를 실시한 축산전문가의 의견도 공사장에서 장비 가동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유·사산, 성장지연, 번식효율 및 수태율 저하, 폐사 등의 피해와 특히, 사슴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녹용생산성 저하

피해의 개연성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수로 공사의 상당부분이 덤프트럭을 이용한 성토암의 상·하차과정, 브레이커를 이용한 성토암의 파쇄 및 덤프트럭의 후미적재함 충격소음 등 순간 발생소음이 높은 작업으로 이루어져 피해 개연성이 인정되고, 발파진동이 그 피해를 가중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배상수준 검토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배상액은 조사된 가축사육 현황을 토대로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피해기간, 소음정도, 관련문헌, 배상사례 등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 가. 배상액 산정

##### ▶ 한우

한우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축산물 가격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 당해 연도의 연 평균 가격을 적용하되, 성장지연의 경우는 성우 250kg의 가격을 적용하며 후유장애 기간은 1월로 적용하여 성장지연에 따른 피해액은 1,097,172원(성장지연율 15%), 번식률저하 251,822원(번식저하율 10%), 합계 1,348,994원으로 한다.

##### ▶ 사슴

사슴의 경우는 (사)한국양목협회의 피해 연도별 사슴의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후유 장애기간은 1월로 적용하여 유사산 및 폐사 발생 피해 2,332,500원(각 1두), 수태율

저하 피해 2,231,336원(수태율저하율 10%), 성장지연피해 2,396,082원(성장지연율 15%), 녹용생산성 저하 피해 6,022,079원(녹용생산성 저하율 15%), 합계 12,981,997원으로 한다.

#### 나. 배상액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총 14,373,983원(피해액 14,330,991원 + 수입인지대 42,992원)으로 한다. 